

제 목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□ 중권선물위원회는 6월 30일 제13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㈜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중권발행제한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
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**회계법인**과 소속 **공인회계사**에 대해서는 **감사업무 제한** 등의 조치를 의결 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

 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6.30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(난위 : 맥만원) 조 치
외사병 등	시 식 사 양	소시
(주)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	【회사】	회 사 :
결산기 : 2015.6.30. 2015.12.31. 2016.12.31.	①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 ('15.6월 21,900백만원, '15.12월 35,180백만원, '16.12월 12,712백만원)	- 증권발행제한 2월 - 감사인지정 1년
비상장법인 업종 : 상호저축은행업	- 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 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, 해당 내재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,	
110 · 82/14-81	-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 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	
	②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('15.6월 14,586백만원, '15.12월 15,127백만원, '16.12월 9,381백만원)	
	- 회사는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,	
	-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함으로써 파생상품 부채를 과소계상함	
		. 그 0 개도이 뒤게 ㅜ 니 그)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치
㈜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	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	한울회계법인 :
	①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'15.12월 35,180백만원)	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%
	- 감사인은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_ 지저히사에 대하 가사
	② 콜옵션부채 평가 감사절차 소홀 ('15.12월 15,127백만원)	- 직무연수 2시간
	- 감사인은 파생상품(콜옵션)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

______ 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